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운영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476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2. 2.

발 의 자 : 운영희 의원

찬 성 자 : 이인식, 장규권 의원

1. 제안이유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의 제명 및 시행령 조항 변경(안 제1조).

나. 위원회 위원 수 확대(안 제2조).

다. 위촉직 위원의 성별 관련 규정 추가(안 제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88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기 타

- 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- 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- 3) 입법예고 : 2024. 2. 5. ~ 2. 13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”를 “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7명”을 “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제2조제3항제2호 중 “3명 이상”을 “6명 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</u>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7조에 따른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7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1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조(구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10명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. <u>단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
풍부한 자 중 3명 이상

3. (생략)

④ (생략)

2. -----
----- 6명 이내

3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

[시행 2022. 8. 15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49호, 2022. 8. 15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3.5.31.>

제2조(구성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 <개정 2013.5.31.>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. <개정 1998.09.26., 2011.03.18., 2018.11.9., 2022.8.15.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3.5.31.>

1. 관계공무원
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 <개정 2013.5.31.>
3.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<개정 2013.5.31.>

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“라 한다) 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2013.5.31.>

제3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3.5.31.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3.5.31.>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조명 개정 2013.5.31> <개정 2013.5.31.>

제4조(임기) <삭제 2013.5.31.>

제5조(회의 및 의사) ① <삭제 2013.5.31.>

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<개정 98.09.26, 2000.12.16, 2005.05.24, 2006.12.29, 2015.5.18.>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개정 2013.5.31.>

1.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
2.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“라 한다)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<개정 2013.5.31.>
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<개정 2013.5.31.>

제8조(지명의 조사)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,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. <개정 2013.5.31.>

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)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. <개정 2013.5.31.>

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5.31.>

제9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·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.<개정 2013.5.31.>

제10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3.5.31.>

제11조(회의록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5.31.>

1. 회의일시 및 장소
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<개정 2013.5.31.>

3.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

4.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

5. 그 밖에 중요한 사항 <개정 2013.5.31.>

제12조(보고)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은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5.31.>

제13조(시행규칙)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<개정 2013.5.31.>

부 칙 (제22호, 1995.03.02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88호, 1998.09.26)(행정기구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
⑧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총무국장“을 “행정관리국장“으로 하고, 제6조중 “동정계장이“를 “동정업무 담당주사가“로 한다.

⑨부터 까지 생략

부 칙 (제293호, 2000.12.16)(행정기구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“총무과장“을“ 주민자치과장“으로 한다.

②부터 ⑧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 칙 (제432호, 2005.05.24)(행정기구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“주민자치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, “동정업무담당주사”를 “동행정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③부터 ⑨까지 생략

부 칙 (제474호, 2006.12.29)(행정기구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“동행정업무담당주사”를 “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⑤부터 까지 생략

부 칙 (제661호, 2011.03.18)(행정기구설치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제741호, 2013.5.31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호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의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른 위촉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, 2015.5.18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자치행정과장” 을 “마을자치과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 (제996호,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, 2018.11.9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제15조제4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 을 “행정문화국장” 으로 한다.

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 을 “행정문화국장” 으로 한다.

⑭부터 ⑯까지 생략

부 칙 (제1249호, 2022.8.15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⑨ 생략

⑩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행정문화국장” 을 “행정안전국장” 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마을자치과장” 을 “자치행정과장” 으로 한다.

⑪~⑰ 생략

관계법령

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11. 16.] [법률 제19047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91조(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)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2. 18., 2022. 6. 10.>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지명 관련 법령,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2. 6. 10.>

③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신설 2019. 12. 10., 2022. 6. 10.>

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9. 12. 10., 2022. 6. 10.> [제목개정 2022. 6. 10.]

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

[시행 2023. 11. 16.] [대통령령 제33847호, 2023. 11. 7., 일부개정]

제88조의2(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)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

2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
3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
4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
5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,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[본조신설 2023. 6. 9.]